

정책논단

#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수립과 제주 여성 정책 연계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정 영 태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계획이다. 지역에서도 중기 계획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중앙부처의 여성정책 기본과 지역에서 수립되는 여성정책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한다

J E J U D E V E L O P M E N T F O R U M

## 1.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발전기본법」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하여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수립된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계획이다. 1998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에 걸쳐 수립된 계획은 여성과 관련된 많은 법·제도적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행동강령으로 제시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여성정책 추진방향과 위상 역시 제고되었다.

그간의 여성정책의 성과를 본다면 호주제 폐지, 고용차별 금지 및 적극적 고용조치 시행,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경력단절여성 지원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 2. 지금까지 수립된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성과

### 1) 제1·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성과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특별위원회가 수립하였으며,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부가 수립하였다.

우선, 성주류화 전략의 도입과 제도화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제도(2002년)를 도입하여 정책의 과정에서 성별 차이에 따라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재정법」(2006년) 제정에 있어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확대하였다. 공직 분야에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1998-2002), 양성평등 채용목표제(2003-2007)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 실시(2003), 정당법 개정(2002, 2005)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2005)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 중 50% 이상 여성 추천을 규정하였다.

세 번째로 남녀고용평등 강화를 하였다. 남녀차별금지법 제정(1999)을 통해 성희롱 등 업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남녀차별문제에 대한 예방과 구제를 강화하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간접차별금지, 사업주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2005)를 의무화함에 따라 여성에 대한 고용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였다.

네 번째로는 일·가족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및 보육서비스를 확대하였다. 노동3법 개정을 통해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규정(2001),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확대, 유·사산시 보호 휴가 사용(2005) 등을 명시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2004)을 통해 보육예산 대폭 확대, 평가인증제도 도입과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등 실질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다.

다섯 번째로 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등 여성인권보호 기반을 강화하였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폭력피해여성 ONE-STOP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성매매방지법 제정(2004)과 함께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매매 집결지 축소 등 성매매와 관련 여성 중심의 처벌에서 성구매자와 알선자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논란이 되었던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이 2005년 개정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사회 포용성 증대와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계기가 마련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2004) 제정으로 가족 정책의 인프라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수립 및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졌다.

## 2)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성과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는 경력단절여성, 일·가족 양립지원제도, 돌봄 분담, 여성·아동 폭력 방지, 다양한 가족 맞춤형 제도를 대표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우선,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취업지원 기반구축으로 2008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정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직업상담·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지정 운영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 도입된 것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가족 양립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에서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까지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 및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가족돌봄 휴직 청구권 제도 도입 및 의무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제도를 확충하였다. 그리고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 주40시간 근무제 확대, 유연근무제 확산 등 경직적인 근로·근무 환경을 개선하였다.

세 번째, 여성 중심의 돌봄을 사회서비스로 전환하였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사회바우처사업을 도입하면서 가족내 여성의 전유물인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켰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시설 및 아동별 지원을 확대하여 맞벌이 가구 등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켰다.

네 번째,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였다. 형법상 친고죄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대상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 등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를 강화하였다. 특히 강간죄의 경우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성폭력범죄에 있어 진술전문가 도입 및 양성과

법을 조력인 제도를 성인까지 확대하였다.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긴급임시조치권, 피해자보호명령제를 도입하였고, 성폭력 피해자 생계·양육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분리시켰다. 그와 함께 범죄·피해자 유형별로 특화된 피해자 지원기관 설치로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대폭 강화 하였다. 아동에 대한 폭력이 심화되면서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2008),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2009년)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아동안전지도 제작,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등을 운영하였다.

다섯 번째로는 다양한 가족과 여성별 특성화된 서비스 도입 및 확대로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 요건 완화,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대한 생계·주거지원 확대 등 여성 빈곤 완화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였다. 청소년한부모가 증가함에 따라 자립지원사업 시행,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서비스 확충 등 가족 대상의 사업을 확장시켰다.

여섯 번째로 여성의원, 여성공무원의 꾸준한 증가와 여성 분야의 국제협력 확대이다.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15.7%(2012)까지 증가되고,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20.1%(2010)까지 확대되었다. 공무원의 여성비율 역시 중앙의 경우 47.2%(2010), 지방 29.8%(2010) 등 꾸준히 증가하였다. 유엔 여성기구(UN Women)에 대한 기여가 2012년 440만 달러까지 확대되었고, 초대 집행이사국(2011~2013년) 및 의장국(2012년) 역할을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면 실시, 성인지예산제도 및 여성친화도시 도입 등 성인지적 정책 추진기반이 구축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중앙부처, 지자체의 사업은 물론 제·개정 법령과 중장기 계획까지 확대 시켰으며, 성인지예산제도의 경우 2009년 중앙부처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었다. 2009년부터 추진된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2012년 말 39개 도시까지 확대되었다.

### 3) 지금까지 수립된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한계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5년 동안에 걸쳐 추진된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성주류화의 확산 등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여성정책의 변화를 주도하였는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성 취업 지원 인프라가 확충되었지만, 국가 차원에서 여성 고용률 제고는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중·장년 여성의 취업이 확대된 반면, 20·30대 여성 고용 역시 저조하다. 여성일자리가 비정규직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결과적으로 여성 고용의 질 저하 및 여성 근로자의 사회보험, 모성보호 제도 등에서 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돌봄서비스로 자녀양육과 어르신 돌봄에 대한 정책의 강화와 실효성 이다. 개선되지 않는 장시간 근로관행, 성별고정관념의 유지 등으로 가사와 양육에 대한 1차적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남아있다. 실질적으로 육아휴직 남성이 증가 되었다고 하나 2012년의 경우 6만 4069명 가운데 2.8%인 1,790명만이 남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의 스웨덴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의 20.8%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화됨에 따라 결국 만혼 및 저출산, 고령산모 증가 등 또 다른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셋째,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인 정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폭력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가 흉포화 되고 가정폭력, 성매매 알선·구매 역시 상대적으로 대처 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에 대한 프로그램과 인프라가 구축되었지만 질적인 수준이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은 물론 고령화에 따른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여성북한이탈주민 등 가족은 더 다양해지고 있지만, 자립지원을 위한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 밖에 모성보건을 제외하고 여성 건강에 대한 정책 역시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적 정책개선과 성격차 완화를 위한 총괄·조정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여성정책과 관련 성인지적 정책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가 미약한 실정이다. 결국 이들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의 강화를 통해 국가의 성평등 책무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3.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제4차 여성정책은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성별격차 해소와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로 3대 목표, 7개 대

과제, 21개 중과제, 66개 소과제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187개의 단위과제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한다.

제4차 기본계획의 특징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을 최우선과제로, 돌봄과 일·가족 양립 과제 통합,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복지 및 건강권을 별도 과제로 부각시킴과 동시에 여성노인·빈곤층, 한부모 등 다양한 집단을 위한 과제와 건강권을 강화시켰다. 아울러 여성의 대표성과 문화·미디어 등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부분의 정책과제를 적극 개발하였다.

〈표 1〉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대과제, 중과제

대과제	중과제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1.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
	2.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3.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 지원
	4.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2.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1. 돌봄의 사회적 부담 강화
	2. 일과 가족의 양립 기반 강화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보장	1.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확대·지원 내실화
	2.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3.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4.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실효성 제고
4.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1.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 확대
	2.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3. 여성의 건강지원 강화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확대	1.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2.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3. 국제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 주도적 참여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1.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2. 평등하고 여성친화적인 방송·문화예술 환경 조성
7.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1. 성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2. 성평등정책 추진 주체의 역량강화
	3.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정비

출처 : 여성가족부, 2013~2017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우선 제1과제인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부문은 4개 중과제 21개 소과제로

재직 및 경력단절여성정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 일자리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전 지원을 신규과제로 포함시켰다. 기존 농어촌 여성 관련 과제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여성농민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어업 종사 여성의 취업지원 과제를 포함시켜 여성 내부의 격차 및 계층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을 통해 자립·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2012. 1.26. 법률 제11211호)의 제정에 따라 여성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다양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2〉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부문

중과제	소과제
1-1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	1. 청년 여성의 취업지원 확대
	2.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3. 경력단절여성 지원 강화
	4.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5. 여성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1-2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1. 여성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고용복지 강화
	2.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강화
1-3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 지원	1.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2.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1-4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1. 여성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지원
	2. 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3.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 확대

출처 : 여성가족부, 2013~2017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2과제인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구축 부문은 2개 중과제, 7개 소과제로 돌봄 경감을 위한 정책과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돌봄과 관련 기존 정책을 확장시키는 정책과 함께 민간베이비시터 관리 강화, 노인 가족돌봄자 지원 강화, 여성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근로자지원(EAP)서비스<sup>1)</sup> 전문화 등의 신규 과제를 발굴 포함하였다.

1) 근로자지원(EAP)서비스는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상담, 컨설팅, 코칭, 서비스 연계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근본적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복리후생 제도를 말한다.

〈표 3〉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중과제	소과제
2-1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1. 국공립 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2. 부모 선택을 보장하는 자녀양육 지원 확대
	3.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4.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2-2 일과 가족의 양립 기반 강화	1.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2.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강화
	3.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출처 : 여성가족부, 2013~2017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3과제인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보장은 4개 중과제, 12개 소과제로 피해자 지원,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등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 추진되는 과제와 함께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도록 하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 사회 여성폭력방지 및 대응을 위한 지역연대 활성화로 광역형·기초형 운영 모델을 적용·확산시켜 다각화 시키도록 하였다.

〈표 4〉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보장

중과제	소과제
3-1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내실화	1.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2.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3. 폭력피해 여성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3-2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1. 국제결혼 등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2. 이주여성의 권리보호 및 지원 강화
3-3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1.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확대
	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제고
	3. 성희롱, 성매매 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3-4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실효성 제고	1.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2차 피해 방지
	2.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강화
	3. 성매매 알선, 구매 등에 대한 제재 강화
	4. 피해자 보호·집행·예방의 통합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출처 : 여성가족부, 2013~2017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4과제인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부문은 3개 중과제, 8개 소과제로 다양한 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내실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게다가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로 건강권을 강화시켰다. 가구 형태의 변화에 따라 주거지원과 여성 1인 가구 등의 급증으로 주거안전 지원 등을 신규과제로 발굴하였다. 건강과 관련 청소년을 위한 여성적합형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건강한 식습관 지원, 여성근로자의 건강증진 기반 구축을 포함시켰다. 모성건강과 관련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가정내 산후조리 지원 확대 역시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표 5〉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중과제	소과제
4-1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 확대	1.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여성친화성 제고
	2.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4-2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1.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및 비양육부모 책임 강화
	2.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확대
	3.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
4-3 여성의 건강지원 강화	1.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2.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3.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출처 : 여성가족부, 2013~2017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5과제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확대 부문으로 3개 중과제, 11개 소과제로 기존 공공 분야의 대표성 제고와 함께 일본위안부에 대한 사회인식 확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다각화 등 국제사회 내 동반자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6〉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확대

중과제	소과제
5-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2. 여성 관리직 진출 확대
	3. 정부위원회 여성 대표성 제고
	4. 교육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5. 군인·경찰 등 특수직에 여성 진출 확대

중과제	소과제
5-2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1. 통일 분야 여성의 참여 확대
	2.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sup>2)</sup>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3.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사회적 인식 확산
5-3 국제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 주도적 참여	1.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2.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다각화 및 성인지적 관점 반영
	3. 한인여성의 국제적 역량 강화

출처 : 여성가족부, 2013~2017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6과제는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으로 2개 중과제, 7개 소과제로 초·중등 교육에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적 관점을 강화시켰다. 아울러 방송·문화예술 환경을 평등하고 여성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과제를 포함시켰다. 이는 최근 SNS 사용 등이 급증하면서 정보화 부분의 성별격차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정보접근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과제가 발굴되었다. 그 밖에 여성문화유산과 여성문화예술인 지원은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도 함께 공동 협력하는 과제로 확대 시켰다.

〈표 7〉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중과제	소과제
6-1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1.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양성평등적 관점 강화
	2. 교원의 양성평등의식 제고
	3. 성평등한 학교운영 기반 구축
	4. 고등교육의 양성평등적 운영 강화
6-2 평등하고 여성친화적인 방송·문화예술 환경 조성	1. 미디어에서의 성차별 개선
	2. 문화예술·관광 및 체육 분야 여성역량 강화
	3. 여성의 정보화 역량 제고

출처 : 여성가족부, 2013~2017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는 폭력과 무력 분쟁을 종식하고 강고히 하기 위하여 평화·안보 분야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결의한 것으로 2000년에 채택되었다. 평화와 안보에 있어 모든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쟁 무기화된 성폭력을 엄벌하며, 평화유지 활동과 재건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도록 하는 결의이다. 그 결의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2011년 유엔안보리 결의 1325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 나라는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 총 25개국이다.

제7과제는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부문으로 3개 중과제, 9개 소과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등을 반영 성인지예산과 관련 과제를 별도의 소과제로 확대하였다. 그 밖에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과제를 포함시켰다. 특히,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특정평가의 하나인 “정책관리 역량” 평가에 성평등 정책 책무성 지표<sup>3)</sup>로 포함시켜 책무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9년부터 도입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 과제를 포함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표 8〉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성평등 정책 추진 역량 및 책무성 강화

중과제	소과제
7-1 성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1.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질 제고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기반 강화
	3.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제고
	4. 성인지 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7-2 성평등정책 추진주체의 역량강화	1. 공무원 성인지교육 확대 및 특성화
	2. 전문인력 양성의 체계화
	3.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7-3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정비	1.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기능 강화
	2.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출처 : 여성가족부, 2013~2017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4.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과 제주 여성정책의 연계 방안

제주특별자치도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5개년 계획에 비하여 4개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으며,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2011~2014)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키워드는 경제, 돌봄, 일·가정 양립, 폭력 근절과 인권, 여성·가족복지, 건강권, 대표성과 참여확대, 평등의식과 문화, 성평

3) 책무성 지표에 포함된 내용은 장·차관 및 고위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시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개선실적, 성인지 예산 편성 실적, 공무원 성인지교육 실적 등을 포함 시켰으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의 경우 성인지교육 실적 반영시 소규모 심층교육의 경우 교육인원수 산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되었다.

등정책 추진과 책무성 등 13개로 축약해 볼 수 있다. 반면 제주여성정책은 여성·가족, 경제와 인력개발, 사회·문화, 인권, 건강·복지, 권익·성주류화, 여성친화도시등 11개로 축약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중앙부처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내용과 제주지역의 여성정책이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연계를 하는데 일부분 한계가 있다. 여성가족 부문의 경우 보육정책 자체에 아이사랑플랜 등을 통합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상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결혼이민자 등 이주여성과 관련 정책이 세부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간과되고 있다.

돌봄 정책과 관련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세부적인 과제를 소과제로 제시하면서 다양한 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일부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 역시 차기 여성정책 수립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건강과 관련된 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배제되고 기존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을 그대로 정책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통해 남성에 대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여성정책 기본계획 기초가 지금까지 수립된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변화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빨리 수용하고 지역 정책으로 녹아들게 하는데 지역 차원의 한계가 있다. 제주 여성정책은 제주 여성의 미래를 위한 밑그림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이 제주여성정책 중기계획이다. 앞으로 여성정책 수립에 있어 성평등을 지양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토대로 지역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정책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JDI**

#### \*출처

- 여성가족부. 2007.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7.10.31
- 여성가족부. 2013. 2013~2017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2010.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중기계획(2011~2014)

#### \*인터넷 자료

- 여성신문. 2013. 2. 1(1223호 사회)<http://www.womennews.co.kr/news/56058>